

대학원 학칙

[시행 2022.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조제2항에 의거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

제2조(종류)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종류는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 2008.12.1., 2011.3.1., 2011.11.1., 2012.10.1.>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특수대학원: 복지산업대학원

제2조의2(교육목적) 각 대학원 고유의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 2011.11.1., 2012.10.1.>

1. 대학원: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심오하게 교수 및 연구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고 지도자적 품성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복지산업대학원: 복지산업분야에 관한 체계적 지식을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1.]

제3조(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06.3.1., 2008.12.1., 2019.8.14.>

②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 협동과정 및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에 의한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6.3.1.>

③ 일반대학원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12.1., 개정 2019.8.14.>

④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를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08.12.1.>

[전문개정 2006.1.1.]

제4조(학과 및 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학생 모집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학과 또는 전공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 2006.3.1., 2006.10.16., 2008.1.24., 2008.12.1., 2011.3.1., 2011.11.1., 2014.10.24., 2015.10.1., 2017.9.1., 2020.10.13., 2021.8.12., 2021.10.1., 2022.1.24., 2022.8.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별도정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9.1.>

1.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 학생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산업교육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수업연한,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9.1.>

[본조신설 2008.12.1.]

제5조(수업) 각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 2008.12.1., 2017.9.1.>

제5조의2(학년도 등) ①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은 「대학원 수업·이수학점·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

제2장 입학

제6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 2006.8.1.>

제7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한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6.1.1., 2008.12.1., 2017.9.1.>

1. 석사과정(통합과정 포함)
 -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석사과정(통합과정 포함)에는 지원자의 출신학과 이외의 학과에도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06.1.1., 개정 2017.9.1.>
- ③ 박사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동일한 계통학과 출신자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다른 계통학과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학과의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
- ④ 삭제 <개정 2011.3.1.>

제8조(지원절차)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6.1.1., 2007.1.16., 2017.9.1.>

제10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8.12.1.>

- ②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7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 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합격 후 정당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1.]

제11조(재입학) ① 각 대학원 학생으로 제적(징계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여석의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 ② 재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2(외국인학생)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② 외국인 학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외국인학생의 특례 입학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6.8.1., 2017.9.1.>
[본조신설 2006.1.1.]

제11조의 3(편입학) ①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교과 과정에 따라 인정 기준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자는 본교 해당대학원에 1학년도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편입학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9.1.>
[본조신설 2006.8.1.]

제3장 수업 및 재학연한, 교과,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2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1., 2012.10.1., 2017.9.1.>

1. 일반대학원
 - 가. 석사과정
 - ㄱ. 논문심사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하 "논문학위과정"이라 한다) : 2년
 - ㄴ.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하 "학점학위과정"이라 한다) : 2년6월
 - 나. 박사과정 : 2년
 - 다. 통합과정 : 4년
2. 특수대학원 : 2년6월
- ②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1년 이내, 박사과정은 6개월 이내, 통합과정은 1년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편입학자는 조기 수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16., 2017.9.1.>

[전문개정 2006.1.1.]

제12조의2(재학연한) 각 대학원은 재학연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 <개정 2008.12.1., 2012.10.1., 2017.9.1., 2019.1.21.>

[본조신설 2006.1.1.]

제13조(교과과정) 대학원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교과과정 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7.1.16., 2008.12.1., 2017.9.1.>

제14조(수료학점) ① 각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는 24학점 이상, 박사는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대학원 수업·이수학점·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7.9.1.>

②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9.1.>

[전문개정 2006.1.1., 2008.12.1.]

제15조(수강신청)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6학점,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학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 2006.8.1.>

② 해당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학생은 전학에서 정한 학점에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6.1.1., 2011.11.1.>

제15조의2(보충과목) ①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학생 또는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자격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그 하위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수료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가", "부"만 결정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에 대해서는 보충과목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2.10.1., 2019.8.14.>

② 제15조의2 1항에도 불구하고 하위과정과 전공이 다르거나 유사한 자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 및 인정학점의 한도 등에 관한 결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12.1., 개정 2011.11.1., 2021.8.12.>

③ 보충과목은 해당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하위 학위과정 과목 중에서 필수적인 과목을 이수 보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학과 교수회의에서 이수 대상자별로 교과목을 선정하고 주임교수는 이를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1., 개정 2011.11.1.>

④ 해당학과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 학과(전공)주임교수의 보충과목 학점인정신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2.1., 개정 2011.11.1.>

⑤ 보충과목을 따로 개설할 수 없으며, 해당학과에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과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유사한 학과(특수대학원 포함)의 교과목 중에서 이수케 할 수 있다. <신설 2008.12.1.>

⑥ 삭제 <2012.10.1.>

[본조신설 2006.1.1.]

제16조(학점 교류 및 인정) ①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타 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환을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06.1.1., 2011.11.1.>

②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 2007.1.16.>

③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수업·이수학점·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6., 2017.9.1.>

제17조(성적평가) ① 교과학점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해서는 "S(Satisfactory)", "U(Unsatisfactory)"의 등급을 부여하고,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1., 2019.1.21.>

등급	점수	평점
A ⁺	100 ~ 95	4.5
A ⁰	94 ~ 90	4.0
B ⁺	89 ~ 85	3.5
B ⁰	84 ~ 80	3.0
C ⁺	79 ~ 75	2.5
C ⁰	74 ~ 70	2.0
F	69이하	0

- ② 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수업·이수학점·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1., 2006.8.1., 2017.9.1.>
- ③ 삭제 <2006.8.1.>

제17조의2(이수인정) ① 교과목의 이수능은 학점단위로 한다.

- ②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제17조제1항의 C⁰ 이상 또는 S를 취득한 학점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6.8.1., 2008.12.1., 2019.1.21.>
- ③ 학생은 수업시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7.1.16.>
[본조신설 2006.1.1.]

제18조(수료시기 및 증서 교부) 각 대학원의 수료 인정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하고,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제19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대학원 학위수여 시행세칙」에 정한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9.1., 2019.8.14.>

- ②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1항에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1., 2019.8.14.>
- ③ 학위의 중별과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 학위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전공종합시험 시행세칙」, 「대학원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원 학위수여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1., 2007.1.16., 2017.9.1., 2019.8.14.>
[전문개정 2008.12.1.]

제19조의2(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11.11.1.>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고 이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수여할 학위중별을 결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를 확정한다.
[본조신설 2006.1.1.]

제19조의3(학위수여 취소)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본조신설 2006.1.1.]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0조(등록)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업연한 이내에 수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미취득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에 소정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 연구등록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9.1.>
[전문개정 2006.1.1., 2007.1.16.]

- 제21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일수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1., 2011.11.1., 2017.9.1.>
-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는 4학기, 통합과정에서는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 질병, 임신·출산, 육아, 창업, 기타 부득이 필요하다고 해당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6.1.1., 2011.11.1., 2018.5.1., 2019.1.21.>
- ③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 연기원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6.1.1.>
- ④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해당 대학원에 제출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

- 제22조(자퇴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개정 2006.1.1., 2017.9.1., 2019.1.21., 2022.8.1.>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4. 삭제<2022.8.1.>
 5.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이 결정된 자

제5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 제23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 개설의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 제24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에 개설된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으로 입학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 ②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자격과 같다. <개정 2006.1.1.>
- ③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 및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 ④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1.>
- ⑤ 대학원의 연구생이 연구과정을 수료한 후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정의 이수학점을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06.1.1.>

제6장 장학금 및 학생활동

- 제25조(장학금 및 연구비)** 대학원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풍조성을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7조(학생준수사항 및 상벌)** ① 대학원생은 학칙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 ② 각 대학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또는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6.1.1., 2011.11.1.>
- ③ 대학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1.>
1. 주의(서면제출)
 2. 근신(근로봉사)
 3. 유기정학(4주일 이내)

4. 무기정학

5. 제적

④ 정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해당 원장의 징계 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징계를 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1.>

⑤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해당 원장은 관련부서,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

제7장 직제

제28조(직제) ①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대학원행정팀장과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개정 2011.3.1., 2011.11.1., 2012.10.1., 2019.8.14.>

② 각 학과(전공)에 1인의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교수와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삭제 <2006.1.1.>

④ 삭제 <2006.1.1.>

제28조의2(주임교수와 지도교수) ①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학과(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 학사관리에 대한 제 반사향을 담당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주전공 과제 지정, 이수과목 지도, 논문지도, 연구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지도교수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

③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과 주임교수,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6., 2017.9.1.>

[본조신설 2006.1.1.]

제8장 대학원위원회

제29조(설치 및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1.>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복지산업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AI융합대학장, 공과대학장, 경영대학장, 보건복지교육대학장, 건축디자인대학장, 인문사회대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08.12.1., 2011.11.1., 2012.10.1., 2018.7.1., 2019.3.15., 2021.3.1., 2021.6.1.>

제30조(위원의 임기) 삭제 <2007.1.16.>

제3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2.1.>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학위의 전공영역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과(전공)의 주임교수로 구성되는 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1.1.>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안건발의로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1.1., 2012.10.1.>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9장 보칙

제33조(폐지규정) 이 통합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4조(준용)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대학교 학칙과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

제3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 각종 시행세칙

에 따른다. <개정 2008.12.1.>

제36조(대학원 학칙 개정) 본 학칙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1. 학칙개정안은 총장이 발의한다.
2. 총장은 학칙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학칙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공포한다.

[본조신설 2008.1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통합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정보대학원의 건축계열은 2003학년도부터 폐지하며, 2002학년도 이전의 동 계열 입학생은 정보대학원 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동명정보대학교 정보대학원 및 건축대학원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②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학칙 및 제 규정을 적용 한다.
- ③ 이 학칙 개정 및 편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전에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교육 관계법령 및 규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정보대학원과 건축대학원의 폐지에 따라 졸업결격자 및 복학생이 교과과정에 수강할 교과목이 없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별표 1의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생정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제12조의2(재학연한)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석사학위과정의 공학계열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게임공학과, 정보보호학과 재적생은 공학계열 컴퓨터미디어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의 공학계열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재적생은 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의 공학계열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로봇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공학계열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석사학위과정의 경영사회계열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재적생은 경영계열 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

으로 한다.

5. 석사학위과정의 경영사회계열 경영대학 유통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재적생은 경영계열 유통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6. 석사학위과정의 경영사회계열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재적생은 경영계열 호텔관광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7. 석사학위과정의 경영사회계열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재적생은 사회계열 언론영상광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8. 석사학위과정의 디자인계열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디자인계열 시각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9. 석사학위과정의 디자인계열 디자인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과는 2009학년도까지 존속하며, 동 학과 재적생 중 2009학년도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디자인계열 애니메이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0. 석사학위과정의 디자인계열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디자인계열 패션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1. 석사학위과정의 건축계열 건축대학 건축학과 재적생은 건축계열 건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2. 석사학위과정의 건축계열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건축계열 건축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3. 박사학위과정의 공학계열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보호학과 재적생은 공학계열 컴퓨터미디어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4. 박사학위과정의 공학계열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공학계열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5. 박사학위과정의 공학계열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재적생은 공학계열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6. 박사학위과정의 경영사회계열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재적생은 경영계열 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7. 박사학위과정의 경영사회계열 경영대학 유통경영학과, 재적생은 경영계열 유통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8. 박사학위과정의 경영사회계열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재적생은 경영계열 호텔관광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19. 박사학위과정의 경영사회계열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재적생은 사회계열 언론영상광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0. 박사학위과정의 디자인계열 디자인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과는 2009학년도까지 존속하며, 동 학과 재적생 중 2009학년도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디자인계열 애니메이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1. 박사학위과정의 디자인계열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디자인계열 패션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2. 박사학위과정의 건축계열 건축대학 건축학과 재적생은 건축계열 건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3. 박사학위과정의 건축계열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건축계열 건축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4.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특수대학원 재적생의 재학기한은 2010.2.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칭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시행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유통경영학과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재적생은 경영학과 석사·박사학위과정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패션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학과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재적생은 디자인학과 석사·박사학위과정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과정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동 학과 재적생 중 2013년 2월 28일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복지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과정에서 과정을 이수하여 변경 전 학과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4조(학과 및 정원)의 복지산업대학원 학과신설 및 명칭변경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하며, 본 개정학칙 시행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사회복지학전공 재적생은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유아교육학전공 재적생은 유아교육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식품공학전공 재적생은 식품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수업연한)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계열변경에 관한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복지산업대학원 뷰티케어학과의 계열변경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하며, 본 개정학칙 시행 전 재적생은 본 개정 계열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학과신설에 관한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정원은 2021학년도 신입생모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학과신설에 관한 개정학칙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제2조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복지산업대학원 뷰티케어학과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동 학과 재적생 중 2024년 2월 29일까지 졸업 하지 못하는 경우 미용예술향장학과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여 변경 전 학과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정원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정원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의 학과신설 및 폐지에 관한 개정학칙은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 [별표 1]
- [별표 2]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1]
- [별지 제2호서식 2]

[별표 1] <개정 2022.8.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생정원(제4조의제1항 관련)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공학	컴퓨터미디어공학과	35명 (미용예술향장학과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과정없음)	25명 (글로벌인문콘텐츠학 과박사학위과정없음)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예체능	디자인학과		
	미용예술향장학과		
인문사회	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언론영상광고학과		
	글로벌인문콘텐츠학과		
	상담심리학과		
합계		35명	25명

[별표 2] <개정 2022.8.1.>

특수대학원 학과 및 학생정원(제4조의제1항 관련)

대학원	학위과정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복지산업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30명
			유아교육학과	
			상담심리학과	
		예체능	※뷰티케어학과	
			미용예술향장학과	
합계				30명

※ 유아교육학과: "교원자격 해당 없음"

※ 뷰티케어학과는 폐지되는 모집단위이며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8.12.1.>

수 박(석)제 호

수료증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 (○○)학과 (○○ 전공)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명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직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본 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동명대학교 총장 (학위) (직인)

[별지 제2호서식 1] <신설 2008.12.1.>

이 박(석)제 호

이 수 증

성명 년 월 일생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대학교 (OO)대학원 (OO)학위과정 (OOO)학과 (OOO전공)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명대학교 (OO)대학원장 (학위) (직인)

본 대학교 (OO)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본 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동명대학교 총장 (학위) (직인)

제 호

연구실적증명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 (○○)학과 (○○전공)
연구생으로 1년간 아래 논제에 대한 연구를 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였음을
증명함.

논제 :

20 년 월 일

동명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직인)